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560

발의연월일: 2022. 5. 12.

발 의 자:정점식·김상훈·김정재

김태호 • 박덕흠 • 안병길

이채익 • 임이자 • 조수진

홍문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·농협은행, 수산업협동조합·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데,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농협·수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와 농어촌인구의 감소·고령화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할 때 해당 세제 지원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업협동조합·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조

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	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
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	관련 감면 등) ①
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	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	
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	
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	
농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	
합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	
회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	
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	
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	
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	
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	
50을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경	<u>2024년 12월 31일</u>
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	
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	
자금·영어자금·영림자금(營林資	
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	
경우로 한정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